(재)경기아트센터 노동이사(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재)경기아트센터는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동이사(비상임이사) 직위에 대하여 모집 공고 하오니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재)경기아트센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 공모직위 현황

공모직위	인 원	주 요 업 무
노동이사 (비상임이사)	1명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 부의 안건 심의 의결 등

2. 임기: 임명일로부터 2년

3. 보수수준 : 별도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며, 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음

4. 응모자격

- (자격기준) 아트센터 1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총 근로자수의 5%(2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선거권자 복수추천 가능)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 자의 대표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노동이사 임명 불가

'사용자'의 범위

- ① (재단법인 대표) 재단법인을 대표하는 사장
- ② (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 ③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의 실시에 관해서 지휘명령 내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어진 자
- (필수요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
- 2.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선거일정

- O 입후보자 자격심사
 - 입후보 신청자에 대한 응모자격요건 확인 후 선관위에서 입후보자 확정 ※ 결격사유 조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추진 예정
- 선거일 : 2025. 11. 21.(금) (09:00~17:00)
 - (선거권자)「직제 및 정원규정」제4조에 따른 직원과 단원, 계약직원
 - (선거원칙)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및 근로자 1인 1투표
 - (선거방법) 전자투표(온라인) ※ 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용
 - (후보선출) 다득표 순으로 「노동이사 정수」의 2배수 이내 선출 ※ 입후보자 2명 미달 시 재공고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명 응모 시 단독 입후보 가능

○ 임명제청

- 선거결과를 토대로 노동이사 후보자 2배수 이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도지사가 결정
 - ※ 최종 임명자 발표 : 개별 통지

6. 지원서류 접수

○ 접수기간 : 2025. 10. 24.(금) ~ 11. 10.(월) 16: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ggac.or.kr)접수

※ 마감일(11. 10.(월) 16:00)까지 도착분(이메일 접수)에 한해 유효함.

○ 문 의 처 : 경기아트센터 선거관리위원회(기획홍보팀)

7. 제출서류

-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사진부착)
- 입후보자 추천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결격사유확인서 1부

8. 기타 유의사항

- O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모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모를 실시함.
- O 제출된 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함.
- O 노동이사로 임명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원 신분 유지 불가하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함.
- O 노동이사는 기관의 임원인 동시에 근로자의 이중적인 지위에 해당하는 자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고충처리위원 등 지위 병행 불가하므로 사임해야 함.
- O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선거금지사항에 대한 신고는 경기아트센터 **선거** 관리위원회 담당자(031-230-32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4일

경기아트센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